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축산물 수급조절 시 공정위 사전협의 예외 절차 도입〉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69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1. 27.
3. 회 부 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고,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농수축산업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존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10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①생산자등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요청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등 법률 준수를 지도한 경우,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축산법」상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사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수급조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자등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축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등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해당 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생산자등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u><신설></u>	제5조(수급조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10에 따라 생산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u>조정·출하조절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사후에 협의하여야 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u>제5조의10(생산조정·출하조절에 대한 행정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등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요청하는 경우 이 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등의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u> <u>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현행 제도

축산계열화사업이란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고, 농가는 이를 통해 사육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계열화사업자에게 출하하는 생산·유통 방식임.

현행 법령은 돼지, 닭, 오리, 염소 4개 축종에 대해 계열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¹⁾ 이 중 닭, 오리의 계열화가 활성화되어 있음.²⁾

[축종별 계열화율(2024년 기준)]

구 분	계열화 사업자 수	계열화 비율
닭	73개소	94.6%
오리	16개소	97.6%
양돈	115개소	33.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와 같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축산물 과잉생산으로 농업인의 소득불안정이 발생하는 것을

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2) 참고1: 계열화사업자 현황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과잉생산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계열화사업자 및 계약농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다만, 동 조항은 생산자의 요청으로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일정 지역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개정안의 배경 및 취지

생산자단체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과 관련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 중 가금육 사업자를 중심으로 가격 및 생산량에 관한 담합³⁾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해당 생산조정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함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이하 생략)

[공정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분 결과]

구분	주요 지적사항	처분 결과
원종계	○ '13~'14년, 육계협회 내 자체 통합분과 위 등 회의를 통해 원종계 수입량 감축(종계 생산량 감소) 등 합의	○ 4개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삼계	○ '11~'17년, 육계협회 내 자체 통합분과 위 등을 통해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및 출고량 조절 등 합의	○ 7개사 과징금 부과
육계	○ '08~'17년, 육계협회 내 자체 통합분과 위 등을 통해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합의	○ 16개사 과징금 부과, 5개사 형사고발 - 육계협회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토종닭	○ '11~'17년, 토종닭협회 등을 통해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조절을 합의	○ 6개사 과징금 부과 - 토종닭협회 과징금 부과
오리	○ '12~'17년, 오리협회 등을 통해 오리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조절을 합의	○ 9개사 과징금 부과 - 오리협회 과징금 부과
	○ 한국원종의 종오리 분양수량 담합 - 오리협회 주도로 추진	○ 오리협회 과징금 부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닭고기(30~35일)는 사육기간이 비교적 짧아 현행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와 해당 생산자등의 2/3 이상의 동의 및 공정위 협의까지 거치게 될 경우 신속한 수급조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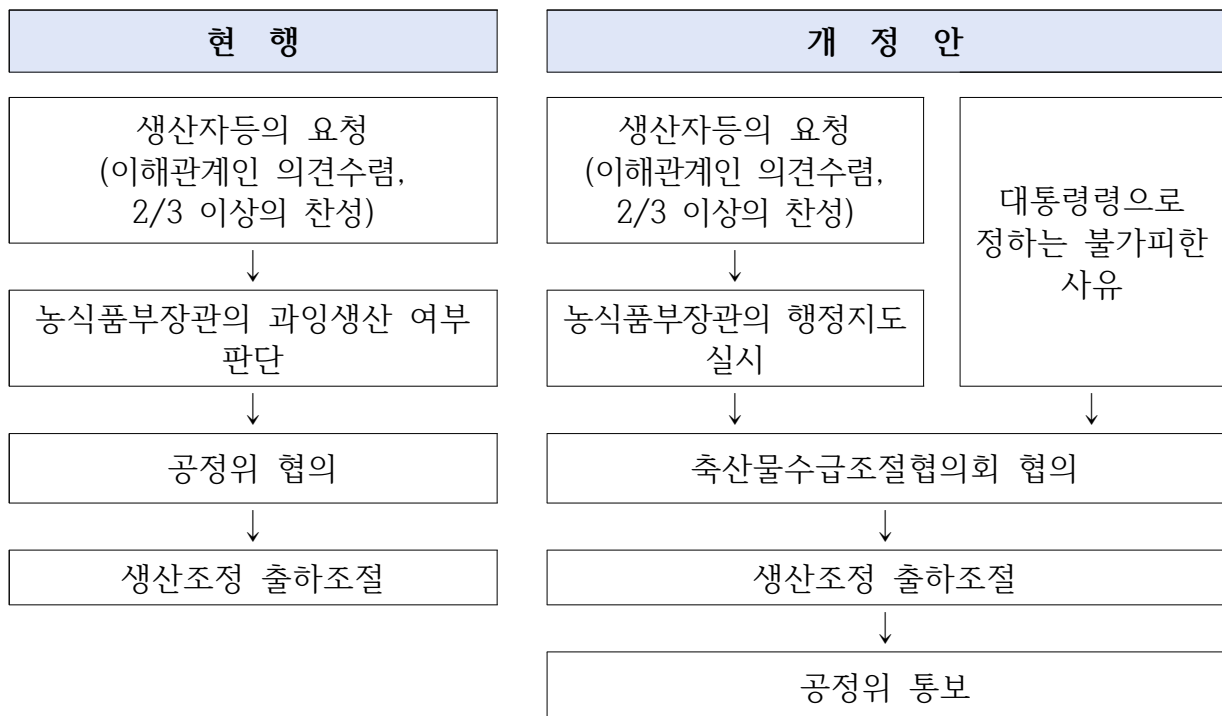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축산법」상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⁴⁾의 협의⁵⁾를 거쳐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3항)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4) 참고2: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개요

5) 개정안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와의 '협의'로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법」상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이므로 '자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생산자등이 수급조절을 요청하는 경우 이 법 및 공정거래법의 준수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함으로써 수급조절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0).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절 절차 비교]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수급 및 가격변동이 일반 공산품과 다른(비탄력적인 수요·공급) 농축산물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급조절 등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행위를 일정 부분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⁶⁾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⁷⁾은 국가의 책무로 농수산물의 수급균형을 통

6)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2누6114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7)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조정, 수매 비축 등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⁸⁾

「축산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일정한 절차와 요건 하에서 농축산물의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공정위와의 사전 협의가 배제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등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에 대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명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불명확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명령이 생산자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예시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행사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둘째, 개정안은 공정위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함께 ‘행정지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동일한 수준의 예외 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안 제5조의10에 따라 반드시 법령 준수를 지도하여야 하므로, 이 요건을 적용하면 사실상 모든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런데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생산자등이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법령 준수를 지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공정위 사전 협의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점검하려는 현행 제도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사후 통보 및 협의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철도회사간 공동운수협정, 보험사 간 상호협정 등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공동행위를 특별히 인정하는 유사 입법례를 보아도 공정위의 사전 동의·협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임.

[타 법률 공동행위 허용 체계]

공동행위 허용방식	해당 법률	대상 공동행위
공정위 협의를 거쳐 인가	철도사업법	철도회사 간 공동운수협정
	항공사업법	항공사 간 운수협정·제휴협정
	보험업법	보험사 간 상호협정
소관부처-공정위 간 협의를 인가로 의제	연구개발특구법	연구개발특구의 공동연구·기술개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정부 선정 기업간 협력모델
	지역특구법	특화특구 내 공동연구·기술개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개정안과 같이 축산물에 적용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⁹⁾에서는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농식품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의 유통조절명령(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현행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상 수급조절 절차와 동일하게 생산자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생산자등의 2/3 이상의 찬성,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등이 요구됨.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 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와의 사전 협의가 배제되는 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함께 관계 부처 이견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4

참고 1

계열화사업체 현황(2024년 기준)

시도	닭(육계·삼계·토종닭)	오리	양돈
서울(1)	주식회사에프엔프레시		
대구(3)	폴토래(주), 에이스 인티그레이션		농업회사법인(주)위로
대전(5)	농업회사법인 희도축산(주)		농업회사법인(주)제일팜스, 농업회사법인(주)돈드림, (주)우성유통, 농업회사법인(주)한국축산데이터
인천(4)	우화농업회사법인(주), 농업회사법인(주)비엠, 농업회사법인 인천축산(주)		강화한돈영농조합법인
광주(1)		농업회사법인마중물팜(주)	
울산(1)		일영이팜영농조합법인(102FARM)	
세종(1)	주식회사리팜농업회사법인		
경기(47)	주식회사에프엘비, 농업회사법인하나푸드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조인팜스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주)안성, 농업회사법인정우식품(주), 송화축산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더팜, 주식회사에버그린푸드, 농업회사법인에버그린팜, 농업회사법인대마, 주식회사한강식품, 주식회사마니커, 유하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마더에이앤제이, (주)에스유포드, (주)연승팜	주식회사장안농원농업회사법인	금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안성,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주)선진한마을, 농업회사법인(주)팜스카이, 농업회사법인(주)자연과함께, 농업회사법인성지팜(주), 농어회사법인성원팜(주), 농업회사법인돈마루(주), 농업회사법인(주)대원, 대지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두미, 농업회사법인(주)대덕, 가보영농조합법인, 오금영농조합법인, 녹돈영농조합법인, 모전영농조합법인, 기대축산영농조합법인, 개척농업회사법인(주), 두레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로하스팜, 사계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길팜(주), 농업회사법인성우농장(주), 농업회사법인(주)순우리, 농업회사법인(주)우리축산, 농업회사법인(주)양지, 농업회사법인(주)원산종돈, 농업회사법인다해(주), 팜스플랜농업회사법인(주)

시도	닭(육계·삼계·토종닭)	오리	양돈
강원(5)	농업회사법인(주)꼬꼬, 영농조합법인청류, (주)해마로		한세종축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금돈(휴업)
충북(20)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한국원종, (주)농협목우촌, 농업회사법인(주)해마로농산, 주식회사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도원농산	(주)농협목우촌,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엠에스푸드, (주)모란식품, 농업회사법인(주)주원산오리, 농업회사법인(주)농장오리	농업회사법인(주)법현, 영농조합법인도자친구들, 농업회사법인씨앤진(주), 농업회사법인(주)새한울, 농업회사법인(주)다산, (주)제이피팜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주)행복, 농업회사법인(주)삼성종돈, 농업회사법인여리(주), 엘디팜영농조합법인
충남(62)	농업회사법인(주)한협원종, 농업회사법인청운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선교농원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주)영진, 농업회사법인(주)부성팜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씨씨팜, 농업회사법인(주)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대농주식회사, 부농축산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대오, (주)한국육계유통, 금화식품(주)보령공장, 대통양계영농조합법인, 농조합법인대통농산, 합명회사진성,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우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연우,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엘림축산,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지호, 농업회사법인태산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신흥, 농업회사법인드림축산(주)		농업회사법인(주)해안, 농업회사법인(주)해남, 진왕영농조합법인, 충무농업회사법인(주)(휴업), 농업회사법인천안농산(주), 농업회사법인(주)월피그, 학성농장축산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알앤에프, 농업회사법인(주)샤인팜, 금오영농조합법인, (주)푸른에프앤디, 동신포스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해피팜스, 농업회사법인(주)청림축산, 농업회사법인리얼팜(주), 가화양돈영농조합법인, 매신양돈영농조합법인, 도플한돈영농조합법인(본점), 농업회사법인(주)국만팜(휴업), 농업회사법인(주)헬로피그, 에스비팜부영농회사법인(주), 농업회사법인(주)해피피그, 백제양돈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그린양돈, 농업회사법인(주)정예, 농업회사법인(주)해우리팜, 농업회사법인(주)성우(휴업), 농업회사법인(주)보람찬, 농업회사법인(주)갑을, 영농조합법인대일, 농업회사법인(주)사조농산, 꿈돼지한돈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양돈사랑, 농업회사법인(주)목현농장, (주)농업회사법인21세기농장, 농업회사법인(주)팜스월드, 농업회사법인(주)송림, 농업회사법인(주)호은팜스, 농업회사법인연수농장(주), 농업회사법인(주)동림

시도	닭(육계·삼계·토종닭)	오리	양돈
전북(23)	업회사법인(주)한송, 농업회사법인가농(유), (주)코리아더커드, 농업회사법인(주)사조원, (주)참프레, 농업회사법인(주)온누리, (주)하림, (주)현대농산, 농업회사법인(주)한닭, (주)동우팜투테이블, 회사법인유한회사옛닭,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일우	(주)참프레, (주)삼호유황오리, (주)유피에프앤비	돈돈팜(주), 농업회사법인(주)행복한농장, 태산영농조합법인, (주)농협목우촌, 농업회사법인(주)네오드림, 농업회사법인(주)디딤돌, 성암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운도축산
전남(10)	(주)금화, (주)다솔	주식회사미스터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다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제이디팜, 농업회사법인(주)사조원 나주공장	농업회사법인(주)에스비팜, 농업회사법인(주)한라산, 농협경제지주(주)종돈개량사업소, 농업회사법인(주)우리손에프앤지
경북(8)	(주)올품, 주식회사폴토래		농업회사법인(주)문경양돈, 농업회사법인구룡축산(주), 영농조합법인자유농장, 농업회사법인(주)산수골안강, 농업회사법인(주)산수골, 농업회사법인지팜(유)
경남(12)	농업회사법인현대씨앤에프주식회사, 무진축산	농업회사법인에스제이팜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신영축산(주), 농업회사법인(주)영호축산, 부경양돈협동조합, (주)해드림엘피씨, 농업회사법인(주)일오삼축산, 농업회사법인(주)우포월드, 농업회사법인(주)비타팜, 농업회사법인(주)자라산하이포지피, 농업회사법인에이에스팜(주)
제주(1)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한라씨에프앤		
계(204)	73개사	16개사	115개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참고 2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개요

- **(기본방향)** ①축종별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 수급안정 대책 수립 및 집행, 필요시 소위원회에서의 안건 제출 후 ②수급조절협의회에서 심의·의결
- **(주요기능)**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개선, 대응방안 수립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
 - * (예시) ① 국내 사육여건·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 사육마리수·가격 산출,
 - ② 수급상황별 대응방안 및 분야별(생산, 가공, 유통, 정부 등) 역할 강구 등
- 개별 축종 수급조절 관련 사안의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심의 의결 위임 가능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생산자, 가공·유통인, 학계, 소비자 등으로 구성하여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유도
- **(구성 및 운영)** 생산자·소비자단체, 유통·가공업계, 학계 및 정부 등 15명 이내(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농식품부, 기재부, 통계청 소속 공무원,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농협경제지주 축산물 수급담당 상무 등 총 5인
 - **(위촉직)** 생산자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업계의 대표, 연구계, 학계 등에서 축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가진 자 등 10인
- *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위원장 포함)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23.9.25.~25.9.24, 당연직 제외)
- **(운영)**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축종별 소위원회)** 농식품부 장관 또는 수급조절협의회에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및 협의회 위임사항에 대한 심의(5개 축종별 소위원회: 한·육우,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 * 축종별 수급안정방안 및 산업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한 자율적 수급안정방안 토의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위원 현황

구 분		근거법조문 (축산법시행령)	소 속
당 연 직 (5)	정부 (3)	농식품부 축산물 수급안정 업무 담당 4급 이상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 물가업무 담당 4급이상 공무원	기획재정부
		가축동향조사 업무담당 4급이상 공무원	통계청
	생산자 대표(1)	농협 제161조의2에 따른 축산물수급관리 업무 담당 집행간부	농협경제지주
	공공 기관(1)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위 촉 직 (10)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1)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법률·경제·경영·축산 분야 대학,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등(3)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대표 및 축산관련 전문가(6)		축산단체협의회
			시·도 축협운영협의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한영양사협회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육계소위원회 위원 현황

구분		소속	직위
위원 (15)	정부(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생산자 대표 (4)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상무
		(사)대한양계협회	회장
		(사)한국육계협회	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	회장
	유통·가공 대표 (5)	(주)하림	대표
		(주)한국원종	대표
		삼화원종	대표
		(주)동우팜투데이블	대표
		이마트	부장
	소비자 대표(1)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학계·연구계· 공공기관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장
		국립축산과학원	센터장
		건국대학교	교수
		축산물품질평가원	본부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